

3. 식수 오염과 산림훼손에 따른 토사 유출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됨.
4. 공원묘원 인근 3개 학교 약 2,500명의 어린 학생들의 정서와 교육환경에 막대한 지장초래 (조양중학교 800명, 가남국고 850명, 백석국고 850명)
5.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증가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초래.
6. 신청지내에는 20년생 잣나무 조림 성공지가 15,000㎡ 가 포함되어 있음.
7. 혐오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 불만고조 및 집단민원 야기 예상.

[6] 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2. 10. 24.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○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증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방법 수당을 신설하기 위해 등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주요골자

- 병원선 승선 공무원에 관한 규정 삭제
- 의료업무 등의 수당 상향조정 ⇒ 약 10%
- 방법수당 신설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“일반직의사. 의료업무등의 수당” 을 “일반직의사 및 전

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“으로 한다.

제2조(의료업무등의 수당) 중 “일반직의사, 전임 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 공무원” 을 “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 의사”로 하고, “제2호” 및 “별표2”를 삭제하며, “제3호” 및 “별표3”을 “제2호” 및 “별표2”로 하고, “별표1, 2”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방범수당) ①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,000원으로 한다.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 연수에 따라 “별표3”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(별표 1)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을 지	월 695,000 원 이하	월 614,000원 이하

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·치과 의사·한의사로 한다.

(별표 2)

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

등급별 근무년수별	가 급	나 급
5년 이상	월 1,012,000 원 이하	월 673,000 원 이하
4년 이상	월 1,006,000 원 이하	월 667,000 원 이하
3년 이상	월 1,000,000 원 이하	월 661,000 원 이하
2년 이상	월 995,000 원 이하	월 656,000 원 이하
2년 미만	월 989,000 원 이하	월 650,000 원 이하

비고 :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(별표 3)

방법수당가산금 지급 구분표

자율방법원 경력	가 산 지 급 액	비 고
1년이상 2년미만	월 8,000 원	
2년이상 3년미만	월 16,000 원	
3년이상 4년미만	월 24,000 원	
4년이상 5년미만	월 32,000 원	
5년이상 6년미만	월 38,000 원	
6년이상 7년미만	월 44,000 원	
7년이상 8년미만	월 50,000 원	
8년이상 9년미만	월 56,000 원	
9년이상 10년미만	월 62,000 원	
10년이상 11년미만	월 66,000 원	
11년이상 12년미만	월 70,000 원	
12년이상 13년미만	월 74,000 원	
13년이상 14년미만	월 78,000 원	
14년이상 15년미만	월 82,000 원	

15년이상	16년미만	월 84,000 원	
16년이상	17년미만	월 86,000 원	
17년이상	18년미만	월 88,000 원	
18년이상	19년미만	월 90,000 원	
19년이상	20년미만	월 92,000 원	
20년이상	21년미만	월 94,000 원	
21년이상	22년미만	월 96,000 원	
22년이상	23년미만	월 97,000 원	
23년이상	24년미만	월 98,000 원	
24년이상	25년미만	월 99,000 원	
25년이상		월 100,000 원	

【 7 】 양주군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2. 10. 24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개정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장지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교자 함.

주요골자

◦ 법적용 규정 개정

- . 현행규정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
- . 개정규정 :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

양주군여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증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